

#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9-30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7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5조제9항에서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있는바,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해촉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7조)

## 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2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3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9. 27. ~ 2023. 10. 17.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
**【붙임 1】**

**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 이라 한다) 제34조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 기준을 심의·결정한다.

**제3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5조(심의회의 운영)**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. 다만,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6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.

**제7조(수당 등)**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의정법무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의정법무과장 박 상 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정협력팀장 백 인 호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정 화 (행정 2048)